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방지〉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6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안 제44조 제2항 및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3
2.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 차단(안 제44조 제3항 및 제4항 등) ...	12
3. 학대행위 관련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 신설)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민석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광고·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

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Ⅲ. 검토의견

1.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안 제44조 제2항 및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다음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이하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 제2항 신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¹⁾
-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동물학대²⁾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³⁾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대행위⁴⁾

1)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⁵⁾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u>권리보 호</u>) ① (생 략) <u><신 설></u>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u>권리보 호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 (이하 “학대행위”라 한다)를 촬 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 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시켜서는 아니 된다.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 호에 따른 노인학대 2.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동물학대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아동학대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 대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u>제1항에</u>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u>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③ ----- ----- -----<u>제1항 및 제2항에</u>----- ----- -----. ④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u>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u> 7. ~ 9.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u>----- ----- ----- ----- -----.

현행	개정안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 이러한 학대정보의 유통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한 학대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통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이에 안 제44조 제2항 및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대범죄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이미 유통이 금지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에 따른 권리침해정보와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구분하여 규제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서는 권리침해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⁶⁾.

- 한편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6)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내용규제 체계>

구분	권리침해정보(제44조)	불법정보(제44조의7)
의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제 방법	(제44조의2)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 제2항·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등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생명 존중 정서 함양 등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제44조의 권리침해정보 체계보다는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체계로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노인학대, 동물학대, 아동학대, 야생동물학대 및
장애인학대는 모두 개별 근거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⁸⁾,
현재도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
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학대행위 관련 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의 개정
실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학대행위의 사회적 파장과 재범·모방범죄를
줄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한 조문으로, 학대행위 등 개별
불법행위 정보에 대한 유통금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행위의 경우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통이 제한되므로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8) 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제44조는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조문으로, 학대행위 관련 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른 학대행위는 각 개별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로 의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법무부는 안 제44조 제2항 및 제44조의7 제6호의4는 모두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이 중복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학대행위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 및 재범 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규정으로, 동물은 법률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동물학대 정보를 규율대상으로 할 수 없고, 노인·아동·장애인의 경우 학대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이미 규율 대상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하며,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포함되므로 불법정보로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학대행위의 의미가 포괄적
·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가 있고,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
정보에 포함되어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함.

2.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 차단(안 제44조 제3항 및 제4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학대행위 관련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44조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학대행위 정보의 공유로 인한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며(안 제44조의2 제3항),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학대행위 관련 정보인 경우 임의로 임시 조치⁹⁾를 할 수 있음(안 제44조의3 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u>권리보 호</u>) ① (생략) <신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u>권리보 호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 -----

9)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현행	개정안
신망에 <u>제1항에</u>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u>방지하기</u>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생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u> <신설>	-----<u>제1항 및 제2항에</u>----- ----- -----. ④ ----- ----- ----- -----<u>방지</u> <u>하고, 학대행위 정보의 공유로 인한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u>----- -----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1. <u>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④ ~ ⑥ (생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 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u>침해한다고</u>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u>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된 경우</u> 2. <u>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제42조의2에 따른 청 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 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 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u> 3. <u>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 되어 있는 경우</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 ----- ----- ----- ----<u>침해하거나 제44조제2항을 위반한다고</u>-----.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안 제44조 제3항 및 제4항, 제44조의2 제3항, 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학대행위 관련 정보 삭제·임시조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마련 및 권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임.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제44조의 권리 침해정보 체계보다는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체계로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며,
현재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학대행위’의 개념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어떠한 정보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사업자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므로 규정 신설의 실익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조문으로, 학대행위 관련 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은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규정으로, 동물은 법률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동물학대 정보를 규율대상으로 할 수 없고, 노인·아동·장애인의 경우 학대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이미 규율 대상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하며, 학대행위 관련 정보가 비정형적이고 다양함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기술적으로 곤란하고, 학대행위 관련 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제한이 가능하므로, 현행 정보통신 심의 체계에서도 유통방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학대행위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학대행위 관련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u>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u>6의4.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u> 7. ~ 9.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u> ----- -----

현행	개정안
<신설> ②·③ (생략)	4.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¹⁰⁾에 해당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¹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1)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¹²⁾(이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¹³⁾.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¹⁴⁾.

○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촬영물등’에 학대행위 관련 정보도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학대행위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성범죄 관련 정보인 현행법상 불법촬영물등과 개정안에 따른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동일 체계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와 운용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3)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4)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현행 제44조의9 제2항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등’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¹⁵⁾, 정보
 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만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은
 디지털성범죄물로서 학대행위 관련 정보와 성격이 다름을 고려할 때
 유통방지 의무 대상에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도의
 취지가 불법촬영물등이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나
 위협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15)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
 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
 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
 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특성 및 불법성의 정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등’이라는 용어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¹⁶⁾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등에만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다른 법률들과 용어 정의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하는 성범죄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 측면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 관련 정보를 성범죄영상물과 동일한 층위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학대행위 관련 정보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16)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등’이 사회적 중대성을 지닌 성범죄 관련 정보임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 정보를 이에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